



LOS ANGELES 카운티 등기-등록국/카운티 사무국

전과를 가진 유권자

Los Angeles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여전히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

귀하는 투표를 하기 위해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이고 캘리포니아주 거주자,
- 선거일에 18세 이거나 그 이상이 된 자,
- 현재 중범죄로 인해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가 아닌자, 그리고
- 현재 법원으로부터 투표하기에 정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 받지 않은자

전과를 가지고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는 사람:

- 카운티 구치소에 복역중:
 - 경범죄를 선고 받은자 (경범죄는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복역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관계(경범죄 또는 중범죄)
 - 중죄를 선고받고 복역중
 - 재판을 대기 중
- 집행 유예
- 가석방
- 강제적 보호 관찰
-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기간
- 연방 보호 관찰 해제
- 소년원 판결을 받은자

전과를 가지고 등록하고 투표할 수 없는 사람:

현재 중범죄로 인해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

- 주 교도소
- 연방 교도소
- 카운티 구치소 또는 기타 교정 시설*

참고: 일단 귀하가 임기를 마치면, 귀하의 투표권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반드시 registertovote.ca.gov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하거나 또는 유권자 등록 카드를 기입 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형법 2910은 캘리포니아 교정 및 재활부(CDCR)가 카운티 교도소 또는 기타 교정 시설에 중죄인을 수용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교도소 또는 기타 시설에 수용된 주 교도소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등록하고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 자료는 귀하가 배정된 교도소 시설에서 제공합니다.

1. "투표 정보" 상자를 선택하여 재소자 요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투표 조정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투표 하려면 반드시 선거일 최소 15일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유권자 등록 카드와 우편 투표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각각에 예약 번호 포함. 투표 조정자와 지정인 모두에게 반송하거나 미국 우편으로 자비 우편 요금을 제공하십시오.
3. 투표지를 받으면 선택 사항을 표시하고 시설의 투표 코디네이터 또는 지정인에게 제출 하십시오.

작성된 유권자 등록 양식, 우편 투표 신청서 및 우편 투표 투표지는 등록국 사무실을 출입하는 대리인 또는 미국 우편 서비스에 의해 안전한 방법으로 운송됩니다.

구류에서 석방된 경우

- 구류에서 풀려날 때 투표하기 위해 재등록하십시오.
- 등록 양식은 대부분의 공공 도서관 및 관공서에서 또는 LAVOTE.GOV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편 투표 투표지를 받기 전에 풀려난다면, 선거일에 투표 센터로 가서 임시 투표지를 신청하십시오.